국회에서 의결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㊞

2017년 12월 19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무위원 법무부장관 박 상 기

◉법률 제15252호
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

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37조제1항 및 제4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"를 "제37조제1항,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6월 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·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, 이에 따라 2013년 7월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·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「식품위생법」에 신설되었으나, 제조·가공 등을 한 식품,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는 위와 같은 「식품위생법」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.

이에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·가공업자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